



안건번호	제 2 호
심 의 년 월 일	2006. 11. 30. (제 20 회)

**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
기본방향(안)**

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

제 출 자	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	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
	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	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
	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	국무조정실장 김영주
	중소기업청장 이현재	특허청장 전상우
제출년월일	2006. 11. 30.	

안건 요약

①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·조정할 필요성이 증대

- 과기자문회의는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창출·보호·활용을 위해 「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」을 마련하여 대통령님께 보고*
- * 최종 서면보고(9.27)에 대해 '계획대로 이행할것'을 지시(10.19)
- 이에 구축방안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제시

②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 정책과제를 추진

- 정부 R&D사업에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 선형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
- 기업 활용가능 특허의 후속연구 추진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지원
- 기술평가-금융 연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술평가 기관 및 관련 자격의 공신력 제고
-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교육 강화
- 국조실의 「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」 강화, 해외 지식재산협의회 구성·운영 등 국내·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

③ 현재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별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국과위의 심의·조정기능을 활용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을 지원

- * 부처간 지재산 관련정책의 협의 활성화를 위해 (가칭)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

◇ 과제별 주관부처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

◇ '07년 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 「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이행계획(안)」을 상정·확정 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

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(안)

2006. 11. 30.

재과정중 정학보소 경기통기 제술신업 부부부청 교육인적 자원부 부실청
산국특 업무 자조허 원정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	2
1.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	2
2. 지식재산권 정책과제 추진체계	4
III. 역할분담 및 향후계획	5

I. 추진 배경

-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·조정할 필요성이 증대
 - 지식재산권이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경쟁력의 원천*으로 부상하고, 지식재산권 보호문제가 중요한 경제·통상문제로 대두
 - * 국내기업이 5년간('00~'04년) 미국 퀄컴사에 지불한 로열티는 1조원을 상회
 -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시책*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
 - * 미국은 '02년에 「21세기 전략계획」을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중이며, 일본은 「지적재산기본법」을 제정('02)하여 「지식재산입국」을 도모

- 우리나라도 혁신주도형 선진 경제구조의 완성을 위해 국가 기술혁신체계와 연계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이 긴급
 - 정부 R&D사업 관련 지식재산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
 -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의 추진을 위해 「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」을 마련하여 대통령님께 보고
 - 지식재산권의 범 부처적 창출·보호·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

- 이에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

II.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

1.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

㉠ 유망 지식재산의 효과적 창출 및 활용을 통해 창조형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·경제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

□ 정부 R&D의 지식재산 목표관리제 도입

○ 세계적인 신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식재산의 창출·활용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관리

※ 순수기초연구 목적의 사업 등은 예외로 인정

○ R&D 과제에 대한 지식재산 선행조사를 '06년 약 7%에서 '10년 20%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
□ 기업 활용가능 특허의 후속연구 및 사업화 촉진

○ 정부 R&D 우수특허를 추가로 연구개발하여 기술이전하는 후속연구개발(Follow-up R&D) 사업 추진

※ 정부 R&D 특허와 중소기업 수요간의 기술적 차이를 해소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를 촉진

○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마케팅 분야 등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 확대

○ 대학 및 출연(연)의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배분 등에 적극 활용

② 지식재산 지원서비스 강화,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개선을
통해 지식재산 전략체계의 효율성 제고

□ 기술평가-금융 연계시스템 운영 활성화

- 기술가치평가기관이 금융기관의 기술가치 평가능력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는 기술가치평가 표준모델을 보급
-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공신력 및 표준평가모델의 지속적인 점검·개선 추진
- 기술가치평가 관련 전문자격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뢰성 제고

□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

- 중장기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
- 지식재산 창출·활용 및 전담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
 - 정부 R&D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식재산관리 교육 및 출연(연) 연구원의 지식재산 전문가로의 경력전환 지원 등
- 대학/대학원에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과목 설치 지원

□ 국내·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

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및 국무조정실의 「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」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
- 해외 지식재산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화
 - 재외공관, 유관기관,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협의체 구성·운영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애로사항 해결 지원

2. 지식재산권 정책과제 추진체계

- 현재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별 업무체계에 따라 역할분담 하에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추진

※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업무는 현행대로 소관부처별로 수행

-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총괄 조정은 국과위의 심의·조정기능*을 활용

- 각 부처는 조정이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국과위(또는 과기관계장관회의)에 상정

* 국과위는 「지재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(과학기술기본법 제9조)」과 「지재권의 관리·보호정책에 관한 사항(동법 제7조, 동법시행령 제4조)」을 심의

- 부처간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(가칭)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

-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(혁신본부장 주재)

※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제를 발굴하고, 주요 현안의 실무협의를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협력의 場을 마련

- 지식재산정책의 전문적 지원기능을 강화

-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지식재산정책의 전문적 지원기능 확보

- 한국지식재산연구원, 한국기술거래소, 한국발명진흥회 등으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정책 포럼 등을 활성화

Ⅲ. 역할분담 및 향후계획

□ 정책과제별 관계부처 역할분담(안)

정책과제	주관부처	협조부처
1. 정부 R&D사업 지식재산목표관리제 도입		
· R&D사업 지식재산목표관리제 도입	과기부	R&D수행부처
· 지식재산 선행조사 확대	과기부 특허청	R&D수행부처
2. 기업 활용가능 특허 후속연구 및 사업화 촉진		
· 우수특허 후속 연구개발사업 추진	산자부	R&D수행부처
·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확대 지원	과기부	산자부,교육부
·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사업화 평가 강화	과기부	교육부,특허청
3. 기술평가-금융 연계시스템 운영 활성화		
· 표준모델 보급 등 기술평가-금융 연계 활성화	산자부	재경부,중기청,특허청
· 기술평가기관 공신력 점검 개선		
· 기술평가 전문자격 신뢰성 제고		
4.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강화		
·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	산자부 특허청	과기부,교육부
· 지식재산 창출,활용 및 관리자 교육 강화	특허청	R&D수행부처
· 대학/대학원 지식재산 교과목 설치 지원	특허청	교육부
5. 국내·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		
·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 강화 등	국조실	특허청,문화부 등
· 해외 지식재산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	산자부	

□ 향후 계획

- 주관부처 중심으로 정책과제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
-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를 총괄·조정하여 「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이행계획(안)」을 '07년 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·확정
- 이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과기관계장관회의에 보고